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조정 기능 신설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24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조정 기능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2. 16.
3. 회 부 일: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체육인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입니다. 체육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센터의 사건 해결 방식이 소극적 조사에 한정돼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론 도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처분 중심 사건 해결 방식 한계 보완과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 및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의18 신설).

Ⅲ. 검토의견

1.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조정 기능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신설하고, 조정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센터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려는 것임(안 제18조의18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8조의18(분쟁조정)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u> <u>② 스포츠윤리센터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u> <u>④ 스포츠윤리센터는 분쟁조정을</u>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 검토의견

○ 현행법상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18조의4), 스포츠윤리센터는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또는 직권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법 제18조의5),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8조의9).

- 그런데 이러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해결 방식이 소극적 조사에 한정되고, 결과 도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개정안은 스포츠 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법령상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처리 기한이 접수일로부터 최대 120일~150일(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 착수,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120일 이내 사건 처리)¹⁾인 것에 비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은 1개월 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점,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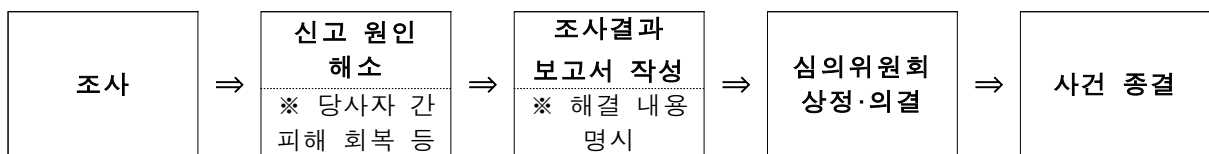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규정」상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등 원인 해소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사중 해결’ 제도가 있으나²⁾ 현재까지 0건인바, 관련 절차를 체계화하여 상향 입법하면 조사기관의 일방적인 사건 처리보다 당사자 간 원만한 조정 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 및 갈등 해소를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도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³⁾.

2) < ‘조사중 해결’ 제도 절차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규정」

제28조(심의위원회 상정) ① 센터이사장은 사건의 상담,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결정하여야 할 때에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결정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인지에 의거한 조사 개시의 결정
3. 신고,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관할 수사기관에게 수사 개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결정
4. 당사자의 장기간 소재불명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사중지에 대한 결정

② 센터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조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결과보고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사전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중 해결) ①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정하고 원활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신고의 주된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센터이사장은 제1항의 조사 중 해결된 내용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3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심의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의 조정 기능]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근거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언론중재법」
조건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조정위원회에 회부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회의체	위원장/위원 주재 조정회의	성·장애 등 ~~분야~~ 별 조정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및 민간위촉위원)	관할* 중재부 (구성: 5명 이내 중재위원) *언론사등 주사무소 소재지
방식	당사자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	당사자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	피해자/언론사 등 신청
조정 성립	합의사항을 조정서에 기재 →당사자 기명날인/서명 →권익위원회 확인	①합의사항을 조정서에 기재 →당사자 기명날인 →조정위원회 확인 ②조정 중 당사자간 미합의 →위원회의 '조정갈음결정' →이의신청 미제기 (조정 수락 간주)	①조정 합의서 작성 → ~~당사자~~ 조사관 기명날인/서명 ②피신청 언론사 등이 조정기일 2회 불출석 ③조정 중 당사자간 미합의 등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 (직권조정결정서 작성) →이의신청 미제기
조정 효력 (+조정 갈음결정)	「민법」상 화해와 같음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창설적 효력만 존재	재판상 화해와 같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기판력 발생)	재판상 화해와 같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기판력 발생)

*주)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정정보도청구등/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하는 '중재' 기능도 있음(조정절차 중에도 신청 가능)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먼저, 2024. 12. 31.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6955)에 따라 신설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보완요구·재징계요구권 관련 규정이 시행된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2025. 1. 31. 시행),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는바(2025. 8. 1. 시행 예정), 위의 새로운 기능이 먼저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후 분쟁조정 기능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한편, 분쟁조정의 개시(안 제18조의18제1항)와 관련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언론중재법」 제18조 등을 참고하여 분쟁조정 신청 또는 직권 결정이 가능한 기한, 즉, 분쟁조정 시작일의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조정에 따른 합의 성립(안 제18조의18제5항)과 관련하여,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 또는 ‘재판상 화해’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⁴⁾.

4) 문체부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제도의 경우 3년간(’21~’23년) 조정 성립이 0건*인 등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정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21) 14건 신청·종결 / (’22) 13건 신청·종결 / (’23) 36건 신청·34건 종결 중 성립 0건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연보, 2023년)

(문체부 수정안)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덧붙여, 조정기능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합의제 성격의 기관임을 본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후 필요하다고 보임.⁵⁾

문 의 처

02)6788-5375

5) 해외 스포츠분쟁조정기관의 경우, 일본·독일·스페인 등 합의제 기관, 중국·캐나다·영국·스위스는 단독 또는 3인 구성으로 운영됨

[참고자료2] 해외 스포츠분쟁조정기관 사례

[참고자료1] 조정 관련 유사입법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5절 화해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5절 재판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절 화해권고결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88조(소제기신청)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편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 판례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1387 전원재판부]

“(전략) 따라서 미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소전화해를 해두지 않는 이상 점용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운영자와 서울시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신속한 원상회복이 어렵고, (후략)”

○ 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전략)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인바(1984.8.14 선고84다카207 판결 참조), (후략)”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중재부) ① 중재는 5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려는 신청인은 중재위원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 대상인 보도 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을 적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 그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이를 소명(疏明)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棄却)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⑥ 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련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참고자료2] 해외 스포츠분쟁조정기관 사례

구분		명칭, 설립 연도·근거	중재 범위(절차)	중재 결정 효력
아시아	일본 단일형 독립기관	- 스포츠중재위원회 '03년 설립, 합의제 기관(3인)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JSAA>	- 도핑에 관한 판정 -1심: 일본체육회 소관 도핑제재패널 -최종심: 스포츠중재위원회 - 스포츠 경기·운영에 관하여 경기단체가 참가자 등에 내린 결정 - 경기 중 심판판정은 제외	- 구속력 - 최종적, 당사자 구속 - 항소 가능 여부 -예외적으로 WADA, IOC, IPC는 CAS에 항소 가능 (도핑방지규정 13.2.3.2항)
	중국 정부 주도형	- 체육중재위원회 '23년 설립, 단독 또는 3인 구성 <Sport Arbitration Commision, SAC> - 체육법 9장(체육 중재)	- 도핑에 관한 판정 -1심: 중국도핑방지기구 제재위원회 -최종심: 체육중재위원회 - 경기참가 자격 등 스포츠에서 발생한 분쟁	- 구속력 - 최종적, 당사자 구속 - 항소 가능 여부 - 불가 (스포츠중재규칙 제71조)
		체육법 제91조 "국가는 체육분쟁을 적시에 공평하게 해결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중재제도를 수립한다.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체육법 제93조 "국무원 체육행정주관부서는 이 법에 따라 체육중재위원회를 조직하고 체육중재규칙을 제정한다"		
북아메리카	캐나다 단일형 독립기관	- 스포츠분쟁해결센터 '04년 설립, 단독 또는 3인 구성 <Sport Dispute Resolution Center of Canada, SDRCC> - 연방법 C-12 (신체활동 및 스포츠법)	- 도핑에 관한 판정 - 1심: SDRCC 도핑판정부 - 2심: SDRCC 항소판정부 - 스포츠 관련 모든 분쟁 - 국가 차원의 분쟁만	- 구속력 - 최종적, 당사자 구속 - 항소 가능 여부 - 예외적으로 WADA, IOC, IPC는 CAS에 항소 가능 (SDRCC Code 9.12항)
		Physical Activity and Sport Act S.C. 2003, c. 2 Sport Dispute Resolution Centre of Canada Establishment of Centre Centre established 9 (1) A not-for-profit corporation is hereby established to be called the Sport Dispute Resolution Centre of Canada, in this Act referred to as "the Centre", which shall include a dispute resolution secretariat and a resource centre.		

유럽	영국 정부 주도형	- 스포츠분쟁해결기구 '97년 설립, 단독 또는 3인 구성 <Sport Resolutions> - NADP: 도핑전담패널 *정부(UK Sport) 재원 운영	- 도핑에 관한 판정 1심: NADP 2심: NADP 또는 CAS - 선수자격, 선발 등 분쟁 - 어린이·노약자 관련 분쟁	- 구속력 - 최종적, 당사자 구속 - 항소 가능 여부 - 예외적으로 WADA, IOC, IPC는 CAS에 항소 가능 (UK Anti-Doping Rule 13.6)
	독일 다원적 구성형	스포츠중재법원 '08년 설립, 합의제 기관(3인) <The German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 도핑에 관한 판정 1심: 독일도핑방지기구 2심: 스포츠중재법원 - 스포츠상업 분쟁(선수 이적, 스포츠 행사관리, 계약 등)	- 구속력 - 최종적, 당사자 구속 - 항소 가능 여부 - 도핑 분쟁 CAS 항소 가능
		종목별 협회 법원 <Intra-Federation Jurisdiction> *정식법원이 아님	- 도핑에 관한 판정 1심: 종목별 협회 2심: 협회 법원 - 경기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 - 코치 훈련 관련 분쟁 - 심판 관련 분쟁	- 구속력 - 종국적이지 않음 - 항소 가능 여부 - 관할 주법원에 항소 가능
	스위스 단일형 독립기관	- 스포츠중재재판소 '83년 설립, 단독 또는 3인 구성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 스포츠중재재판소에 관한 협정(IOC, IFs 등) -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	- 도핑 분쟁 - 당사자간 CAS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 구속력 - 최종적, 당사자 구속 - 항소 가능 여부 - 스위스연방대법원에 일부 항소 가능 ¹⁾스위스에 주소지·거주지·영업소가 없거나 ²⁾당사자간 명시적 합의로 판정 취소 권리를 포기한 경우 항소 불가
	스페인 정부 주도형	- 스포츠행정법원 '14년 설립, 합의제 기관(7인) <Tribunal Administrativo del Deporte> - 스포츠법 39/2022(120조) - 도핑방지법 10/1990(84조)	- 도핑 분쟁 - 스포츠단체가 부과한 제재에 대한 분쟁	- 구속력 - 종국적이지 않음 - 항소 가능 여부 - 상급법원에 제기 가능